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금감원 민원 분쟁조정 금융투자실의 한광중조사관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잘 처리되었기에 남 감사드립니다.
fax)02-3145-8548

1. 민원신고인
은

2. 상대금융회사
부자자문(대표)

3. 민원내용
저는 부자자문에 몇 년전 가입하였으며, 9월8일에 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부자자문을 사모펀드로 바꾸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취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5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인 가 금융위원회에 약관 심사도 받지 않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자본시장법 56조에 위반한 부자자문에 대하여 합당한 법률적인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청하였습니다.

4. 해결사항
부자자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민원신고인이 요구한 선취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5. 금감원 민원 분쟁조정 금융투자실의 한광중조사관님께 감사한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용될수 있고, 소송을 일일이 하기 힘들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부자자문도 그리 행동하였습니다. 힘없는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소액개인투자자인 민원신청인은 위하여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금융투자실의 한광중조사관님께서 민원인과의 전화상담시에 용기와 여러 가지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셔서 밖의 협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소송없이 간단히 해결될수 있도록 자문을 잘 해주셔서 해결이 원만히 진행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금감원의 막강한 저디능력과 권력기관에 맞서서 힘없는 소액투자자를 최대한 적극 도와주시려는 마음과 시스템에 너무도 감동받았기에 이렇게나마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금융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더욱 많은 일들을 해결하실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한광중조사관님과 같은 훌륭하신 분을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렇게 다시 민원실에 민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